



일 잘하는 실력 국회

2020. 1.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일 잘하는 실력 국회

2020.1.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

발간사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설립 이래 66,730건의 입법조사회답과 2,842건의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전문성있고 시의성있게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현안 이슈를 발빠르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이슈와 논점』,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지표로 보는 이슈』, 중요 현안과 쟁점을 다양하게 발굴·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NARS 현안분석』과 같은 현안보고서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입법·정책 주제를 분석·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정책보고서』, 현행 법률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보고서』와 같은 심층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9년 한 해 3종의 보고서를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새로 발간된 보고서들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발간하는 주간 정보 소식지 『의회 외교 동향과 분석』, 외국 법제의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법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분석·제시하여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OECD, UN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월 1회 발간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입니다.

2019년 한 해 발간된 주요 보고서 82건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실국별로 정리하여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주요 보고서가 다시 한 번 알려지고 입법·정책 활동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하 중



CONTENTS

I 정치행정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02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07
03. NARS 현안분석	009
04. 이슈와 논점	014
05.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019

II 경제산업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22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31
03. NARS 현안분석	033
04. 이슈와 논점	049
05. 지표로 보는 이슈	062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066

III 사회문화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74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82
03. NARS 현안분석	087
04. 이슈와 논점	098
05. 지표로 보는 이슈	107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10
07.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17

I

정치행정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3. NARS 현안분석
04. 이슈와 논점
05.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입법·정책보고서 제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9월 24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류영아 입법조사관



-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
-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첫째,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
 - 둘째,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고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
 -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

입법·정책보고서 제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1월 1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최미경 입법조사관, 최정민 입법조사관



-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및 공공목적 CCTV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곳곳에서 불특정다수를 촬영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게 되어 개인의 이동 경로·활동 등 사생활과 직결된 CCTV 영상정보의 관리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실시간 통합·관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관리 등은 자체점검으로 그치고 있어 영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외부기관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 등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셋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경찰 등 외부기관(제3자 제공)에 다수 제공되고 있어, 제3자 제공 방식 개선 및 제3자 제공 시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설정 등의 의무화 필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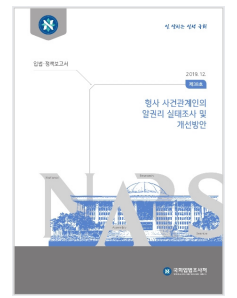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26일

발 간 : 법제사법팀

집 필 : 백상준 입법조사관



- 현행 법규에 의하면 검·경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정의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해줘야 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검·경의 통지 및 열람·등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검·경 내부법규로 규율되는 현 제도의 주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그 외에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는 등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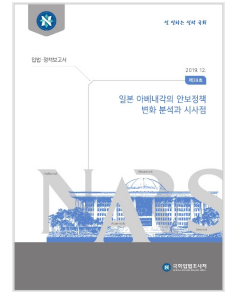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27일

발 간 : 외교안보팀

집 필 : 박명희 입법조사관



-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추진. 이들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이후 지속적 방위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 및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동시추진
-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 필요
 -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필요
 - 한일 간 대북역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견지
 -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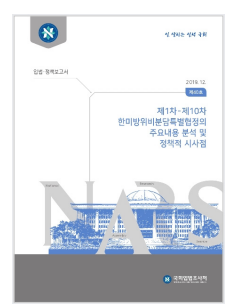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40호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외교안보팀

집 필 : 김도희 입법조사관



- 1991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체결되는 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 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 합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율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결정방식,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 문제가 논의되었음
-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증액요구에 대해 다른 동맹국과의 비교 및 우리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방위비 산정을 위한 치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 절차법(안) 마련,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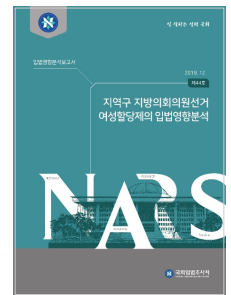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4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26일

발 간 : 정치의회팀

집 필 : 이정진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도입한 이후 지방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무효로 하는 것임
 - 지역구위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지역구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 또한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확산되고 여성의 의정경험과 정치경력이 강화되었음
 - 지방의회의 의정경험을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선 여성의원들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증가함
- 한편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이후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에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음
 - 이는 광역과 기초의회 구분 없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보수가 많고 공천 부담이 적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임

-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제 강화, 보조금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정치교육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경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나 공정성 논란 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비례대표 확대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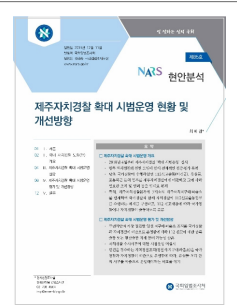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85호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발간일 : 2019년 12월 11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최미경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음
-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 운영 중임
 -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 현재는 국가경찰이 지역치안사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에 있음
-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치안사무조직을 이원화하려는 것이므로,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야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 하여야 할 것이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현장출동조직 등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검증에 그치고 있음
 - **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단일전담체계임
 -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현장출동조직(지구대·파출소)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등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자치경찰의 성공여부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빠른 시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에 달린 것인바,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이 큰 112신고처리 등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체계를 검증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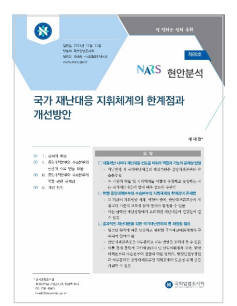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88호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17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배재현 입법조사관



- 대형재난 시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로, 두 기관의 역할 및 지휘체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지는 국가재난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현행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양 기관간 지휘명령 체계, 역할의 중복,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교대 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함
-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단순하고 명확한 국가재난관리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핵심인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운영시스템과 지휘권을 중심으로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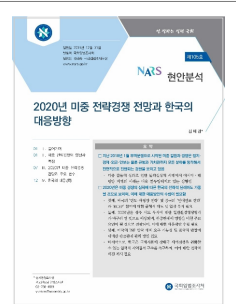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5호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외교안보팀

집 필 : 김예경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 동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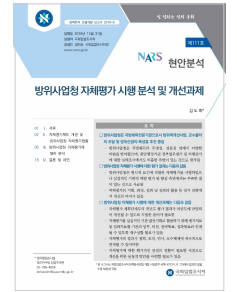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11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외교안보팀

집 필 : 김도희 입법조사관



-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임
 -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의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 보고서는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자체평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위사업청은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관의 역량 평가 및 향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자체평가의 기획, 과정, 결과 및 결과의 활용 등 평가 전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자체평가 계획단계부터 전년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를 실질적인 기관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를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의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자체평가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슈와 논점 제1605호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발간일 : 2019년 8월 20일

발간 : 안전행정팀, 재정경제팀

집필 : 류영아 입법조사관, 송민경 입법조사관



- 본 보고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 있음
-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임. 이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개별소비세법」 별표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제5호에서는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쉐련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일반쉐련의 제세부담금 합계가 담배 판매가격의 73.8%를 차지하는 반면, 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담배 판매가격의 66.8%, 액상형 전자담배는 37.2%를 차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향후 신종담배·유사담배의 출현과 관련하여 전자담배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총 3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앞으로 신종담배의 출현이 가속화·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 즉, 국민의 부담, 유해성,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설정을 통해 전자담배의 세율을 결정해야 할 것임

이슈와 논점 제1606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8월 21일

발 간 : 정치의회팀

집 필 : 이정진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독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비례대표 공천은 중앙당의 심사와 추인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내경선 등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소수자 대표 등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례대표선거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볼 수 있음
-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결과보고서의 제출이나 상향식 공천의 입법화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제시하고 경선 과정에 당원이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당의 자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독일은 당원 혹은 대의원이 비밀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국회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시 결과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내경선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임

이슈와 논점 제16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발간일 : 2019년 10월 28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하혜영 입법조사관



- 정부는 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함
- 전부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으로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 관련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원발의안과는 차이가 있음.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가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
 -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부개정안은 직원 임명권을 광역의회만 부여함. 그러나 광역이나 기초 구분없이 지방의회에 임용권 부여 방안 논의 필요. 특히 인사권 독립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
 -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관련해 전부개정안은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자치조직권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향후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
 - 넷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로 전부개정안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기관구성 방식은 지방선거, 지방공무원 조직·인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기관구성의 유형별로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연계 법률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



이슈와 논점 제1627호

어린이 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1월 18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김현정 입법조사관



-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안의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 외에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제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이러한 통학로 운영사례로부터 국내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린이 통학로 관리 필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이나 학교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외에 학생들의 통학로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를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안전한 통학로의 선정·관리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모든 통학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이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학로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별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내 통학환경 및 여건이 해외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식개선 사업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의 비물리적 수단도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만으로는 완전한 통학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주요 통학로 관점에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정비와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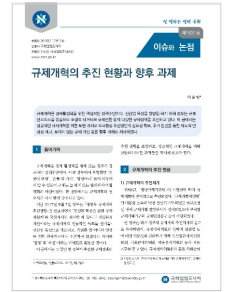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31호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2일

발 간 : 행정안전팀

집 필 : 이승림 입법조사관보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들이 연이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혁신 5법의 법적 기반 위에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 하였음
 - 보수적인 규제행정 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극행정 신고센터, 특별승진, 적극행정 면책 등 상벌체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입법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규제부담의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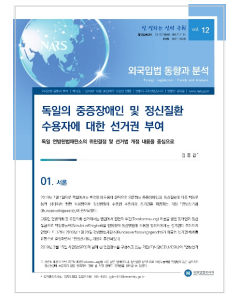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2호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발간일 : 2019년 10월 30일

발 간 : 정치의회팀

집 필 : 김종갑 입법조사관



- 독일에서는 2019년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음
 - 앞서, 2019년 1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BverfGE, 2 BvC 62/14)
- 우리나라는 과거 금지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금지산·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됨.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까지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경제산업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3. NARS 현안분석
04. 이슈와 논점
05. 지표로 보는 이슈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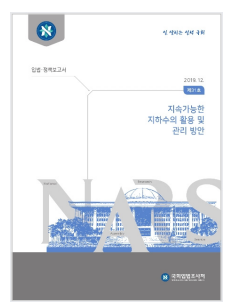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10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김진수 입법조사관



-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 중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
 - 2000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 더불어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한정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
 -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지하수보전구역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 확대
 - 가축전염병으로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 지하수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
 -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
- 지하수 관리 재원 마련
 -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 적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의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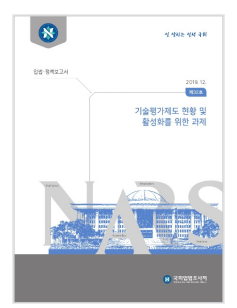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16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박재영 입법조사관



-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운영 중
 - 2019년 10월 기준,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임
 - * 기술평가기관은 전담인력·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행위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거래를 담당
 -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됨
-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지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사업화에 기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고, 기술수요자 - 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의 기능 미흡
 - 비전문가(「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으로 기술평가 결과의 왜곡 발생
 -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 반영 미흡
 -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부실화
- 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는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
 - 첫째,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필요
 -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시장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

-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필요
 -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업무 범위를 재정립
-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넷째,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 기술평가와 관련한 민간자격 중 선별하여 국가자격화 또는 공인자격화를 통해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

※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제2조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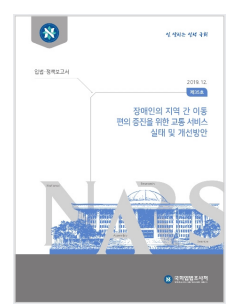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24일

발 간 : 국토해양팀,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김영석 입법조사관, 박준환 입법조사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등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이 지역 내 단거리 이동과 달리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때 현재는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있음
- 현재의 장애인 이동 정책에는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 미흡, 제공되는 개별 교통 서비스의 한계 존재,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서비스 미제공, 장애계 등 정책 당사자의 의견 제시 및 정책 당사자 간 협력 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임
 - 개별 교통 서비스의 한계로 철도 연계교통 불편,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상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부족 및 운행 여건 미비, 교통수단·시설의 낮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등이 지적됨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첫째,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 필요
 - 둘째, 철도 연계교통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영 최적화 및 주체 간 역할 분담, 제도 개선을 통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버스 운행 활성화, 교통수단·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개별 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 셋째, 개별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의 도입이나 시설 개선 뿐 아니라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인적서비스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 추진 필요
 - 넷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 및 장애계,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복지계, 지방자치단체, 교통약자와 함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등 정책 당사자를 포괄하는 정책공동체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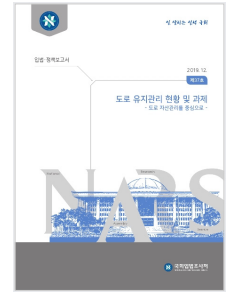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2월 26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구세주 입법조사관



- 2018년 1월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관리가 성능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관리시스템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예방형 관리의 형태임
- 20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임
 -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됨
 - 동 법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
 - 동 법의 제정으로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의 기초가 마련됨
- 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
 - 현행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된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자산관리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
 -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 필요
 -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도로 가치평가와 관련한 감가상각방법의 개선
 - 도로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적용 검토 필요
 -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 사용 부담금 부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활용, 기금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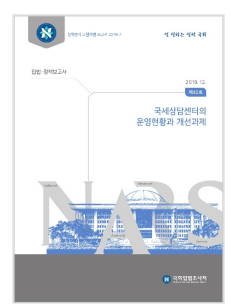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42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문은희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 현황상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세상담센터가 선도적인 국세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선과제를 모색함
-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과세관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으로, 2016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상담채널별·업무분야별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개인납세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저조한 응답률, 월별 응답률 편차, 통화 대기시간의 장기화, 상담사 업무부담 가중화 등의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보고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응답률 제고 및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시 상담인력의 증원을 고려해 볼 필요
 - 통화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상담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 마련
 - 변화하는 세법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 직무관련 교육 시간의 확대 및 교육 계획의 총괄적 수립을 통한 직원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 제고
 - 아울러, 국세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상의 특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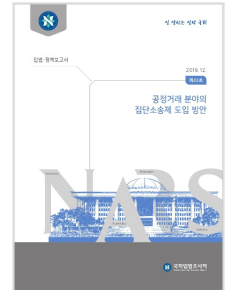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43호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금융공정거래팀

집 필 : 강지원 입법조사관, 조영은 입법조사관



- 2011년 가슴기살균제 사건,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소 제기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임
-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는 원고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되어 소액·다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며,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도는 자금력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함
- 이에,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증권거래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공정거래·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둘째,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 없이도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승소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집단소송제(class action)에서 실제 소송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구성원 중 극히 일부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집단소송에 불참 의사를 표시(집단 제외신고)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됨

- 셋째,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 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이나 복잡하게 설계된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자료는 대부분 기업의 내부분건이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증거 편재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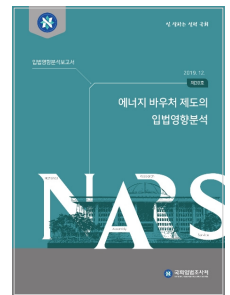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39호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5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유재국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에너지법」을 근거로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인 2013년에는 2.65(Mcal/난방도일)였으나 2016년에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함
- 또한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를 비교 하면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각각 97.8원/Mcal과 92원/Mcal인 것으로 추정되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더 비싸게 에너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의 단가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주거지의 난방도일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하여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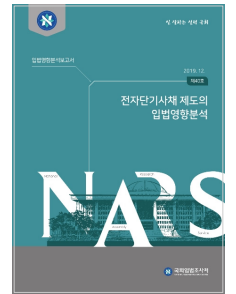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0호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13일

발 간 : 금융공정거래팀

집 필 : 기준하 입법조사관



-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의 발행 및 잔액 현황을 이용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CP는 대체하지 못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CP는 만기 7일 이내물을 중심으로만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유동화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하던 3개월 이내물의 자산유동화CP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전자단기사채에서 1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1일물 신용거래인 콜자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및 시간적 제약이 감소하여 당일물 발행이 가능해지고, 지방에서의 발행이 쉬워지는 등 시장효율성이 증가함
 - * 콜자금은 금융기관에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전자단기사채가 보다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 면제 기간 연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수료 부과나 유통성 정상화, 정보공시 강화 등 CP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전자단기사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공시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NARS 현안분석 제75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17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박인숙 입법조사관



-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 셉테드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임
 - * 셉테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명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함
 - 먼저,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가 없는 실정임
 - 마지막으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셉테드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둘째,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법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NARS 현안분석 제77호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25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장영주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지난 3월 정부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 적용,
 - 미국은 식이보충제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FDA의 사전 승인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둠
 - ※ 정부가 기능성을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Disclaimer’(단서조항)를 표시
 - 일본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신고제로 운영, 식품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출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식이보충제 수입 증가,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무역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 2008~2017년까지 10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연평균 10.58% 증가했지만 무역적자도 9.92% 증가

표 |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시장규모와 무역수지 추이(2008~2017)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액	5,886	6,972	7,862	9,995	10,525	10,420	11,208	11,332	14,715	14,819
수출액	433	457	460	556	585	754	670	905	1,084	1,077
수입액	2,433	2,676	2,609	3,743	3,550	3,863	4,408	4,986	5,880	5,761
무역수지	-2,000	-2,220	-2,149	-3,187	-2,965	-3,108	-3,738	-4,081	-4,796	-4,685
국내시장규모	7,887	9,192	10,012	13,182	13,490	13,528	14,946	15,413	19,511	19,504

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국내시장규모=생산액-수출액+수입액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2018.12., p.32.를 재정리함

- 이에 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
 -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식품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 명시
 - 둘째, 기능성표시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능성 인정 및 표시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 재정비
 - 셋째, 기능성 원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산업 전후방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지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시스템 마련
 - 넷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성 표시 정보 공개 및 소통 채널 확대, 이상사례 신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정비
- 정부는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 대표들과 논의를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관련 고시 개정을 비롯한 기능성표시 식품관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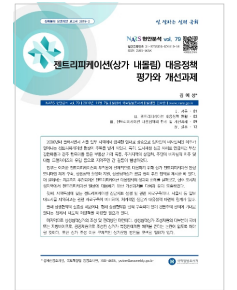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79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1월 7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김예성 입법조사관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와 주민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
-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활성화 지원,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각 지자체들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부각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심층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도시 재생 뉴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구축임.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상가 임대료 정보 등 관련 자료구축의 선행이 필요함
 - 둘째,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임.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요구됨. 특히 상생협약 체결이 건물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구체적인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임. 상생협력상가 조성재원은 대부분 국비 또는 지방비이므로,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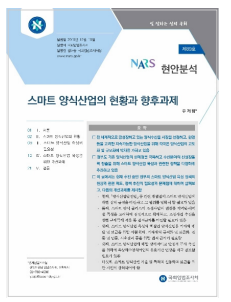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89호

스마트 양식산업의 현황과 향후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19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유제범 입법조사관



-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은 IoT(사물인터넷),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산업을 기술·자본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식산업의 시장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양식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과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전 세계적으로 양식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양식산업 규모는 생산량 기준으로 2030년에 2016년 대비 약 37.5% 증가하고, 2025년 기준 양식기술의 전세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 양식산업의 전후방산업효과를 고려할 경우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육성은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음

*한국은행의 '2017년산업연관표(연장표)'에서 양식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3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9로 나타남

-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하여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

-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 추진은 이와 같은 양식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적 조치임

- 그러나 기존 양식산업의 인력부족, 소규모 영세성, 신규인력 및 대자본 진입 규제, 종자·사료·기자재·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부족, 스마트 양식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 미흡 등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의 제한요소도 많음

-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첫째,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개별법에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의 명확화 필요
 - 둘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범위를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셋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의 핵심인 양식산업용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검증 및 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넷째,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 촉진을 위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유효기간(현재 5년) 연장 검토
 - 다섯째, 스마트 양식관련 기술 및 특허의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앞으로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생산단계 중심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 단계의 수산물 수요 및 세계 시장분석과 그 결과가 생산-가공-유통 단계로 환원되어 관련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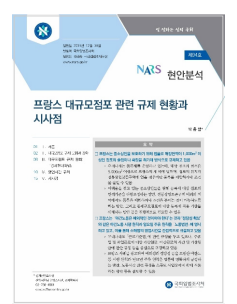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4호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30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박충렬 입법조사관



-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법률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출점이나 확장을 허가제 방식으로 규제하고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는 2008년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장 면적 기준을 3배 이상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1,000m²가 넘는 점포의 신설이나 확장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의 면적 기준은 3,000m²임
- 통상협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처럼 허가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등록제 대상 점포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 적용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노동법전」의 야간노동 관련 규정과 일요일 주휴 원칙에 따라 모든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주휴일’,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노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정당성 확보’ 원칙 등과 같은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노동법전」에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주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야간노동의 시간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예외성과 정당성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야간노동과 일요일 노동 등 영업시간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과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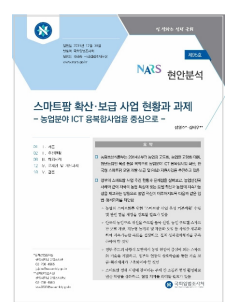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5호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2월 30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장영주 입법조사관, 김태우 입법조사관보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농업혁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보급되고 있음
 -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실증단계를 거쳐 확산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세대 수준인 기술 수준을 2030년에는 2세대, 2040년에는 3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임
 - ※ 스마트팜(smart farm)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온실(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시설농장을 의미함
 - ※ 시설원예분야는 첨단수출형, 연동복합형, 단동간편형으로 구분하여 2017년 4,000ha에서 2022년 약 7,000ha, 축산분야는 2022년까지 주요 축종(양돈, 양계, 한우, 낙농) 전업 농가 5,750호 보급 목표
- 네덜란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업형 영농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에서도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모델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하고, 농업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성과로 참여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에 비해 동일 품목 전체의 영향 등 농업에 주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또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혁신 전략 부족, 예산 증액에 비해 성과관리 체계 미흡,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 유통·소비단계까지 고려된 생산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부족 등 확산·보급의 한계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1세대 스마트팜에서 2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로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 검토
 - 품목별·농업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보급, 지능형 농기계 보급, 자동화 기기·장비 보급 등으로 세분화
 - 기술 중심의 하향식 TOT(Transfer-Of-Technology) 모델에서 농업 현장 중심의 상호학습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
 - 투입재 및 에너지 저감형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확산, 지능화·자동화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 보급을 통한 점진적 농업혁신 방안 마련
-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사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 ICT 융복합과 자동화 기술을 기초로 한 농업 기술의 변화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유도 하도록 농업계의 수요가 반영된 확산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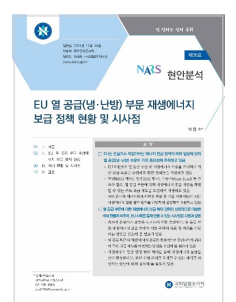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6호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30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박연수 입법조사관



- 우리 정부는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 제도, RFS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열 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한편,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 별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EU의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목표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16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 중 열 공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문에서 대다수 에너지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에 기반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보급 목표 및 계획 수립,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열 공급 부문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 확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에 앞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도 고려하여 이익형량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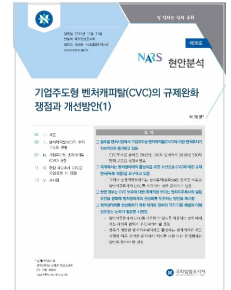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8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박재영 입법조사관



-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출처: CB Insights)
-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
 -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
 -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
 - *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임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비(非)금융권의 일반기업이 전략적인 목적(strategic purpose)을 가지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주체로 나섬. Google Ventures(구글), Intel Capital(인텔), 삼성벤처투자(삼성) 등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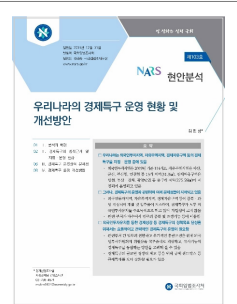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3호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김민창 입법조사관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지역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부산항, 인천항 등 13개 지역(31.3km²),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km²)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다만,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임
 -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km²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전체 또는 일부 면적 등)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2019년 현재는 최초 지정의 54% 수준인 275km²로 축소되었으며, 울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2019년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유사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음
- 한편,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현재는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기능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향후 경제특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관리체계에 대한 조정(총괄조정 기능의 마련, 유사한 기능의 경제특구 조정 또는 일원화 등)이 필요하며,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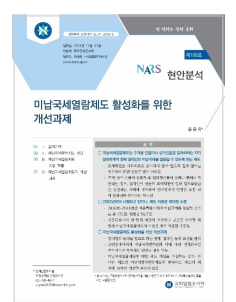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6호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문은희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도의 내용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음
-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6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에 불과
 - 서울특별시의 전·월세 비중과 거주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
- 현행 미납국세열람제도 규정의 분석을 통해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 계약체결 단계에 따른 현행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
 -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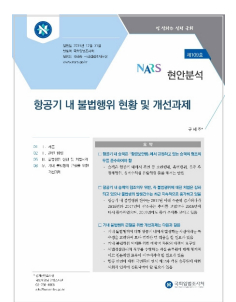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9호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구세주 입법조사관



-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의무 위반(이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10월까지 불법행위는 총 42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임
-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
 - 법 적용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으며, 불법행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내 불법행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발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
 - 「항공보안법」의 탑승 거절 규정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강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객실 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
 - 국민들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객실 승무원의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슈와 논점 제1612호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9월 10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조승래 팀장, 송민경 입법조사관



-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옴
 -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 가능(「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인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 인하기간도 늘어나고 있음(약 4~6개월 → 약 10~17개월)

표 |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사례

시기		인하 수준*	비고
'08.12.19 ~ '09.6.30	약 6개월	30% 인하 (5% → 3.5%, 10% → 7%)	리먼사태 등 국제금융위기
'12.9.11 ~ '12.31	약 4개월	19~30% 인하 (5% → 3.5%, 8% → 6.5%)	유럽 발 국제금융위기
'15.8.27 ~ '12.31	약 10개월	30% 인하 (5% → 3.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16.1.1 ~ '6.30			인하조치 연장(1차)
'18.7.19 ~ '12.31	약 17개월	30% 인하 (5% → 3.5%)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19.1.1 ~ '6.30			인하조치 연장(1차)
'19.7.1 ~ '12.31			인하조치 연장(2차)

주: 종래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랐으나 (2천cc 미만 5%, 2천cc 이상 10%),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5%로 일원화

자료: 관련 법령 및 정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2018.7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예정

■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 시행

- 특히,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음

* (최근) 18년 하반기 : +2.25%, 19년 1~5월 : -0.04%

** (과거) 09년 상반기 : +3.89%, 12년 하반기 : +5.32%, 15년 하반기 : +18.04%, 16년 상반기 : +12.87%

표 |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에 따른 전년도 동기 대비 승용차 판매량 변화

(단위: 대)

개별소비세율 경감기간	세율 인하 수준	국산차				수입차			
		판매분		증가분 (C=A-B)	증가율 (C/B)	판매분		증가분 (F=D-E)	증가율 (F/E)
		경감기간 (A)	전년동기 (B)			경감기간 (D)	전년동기 (E)		
2009.1~6	30% 인하 (5% → 3.5%, 10% → 7%)	536,191	516,125	20,066	3.89%	30,948	37,927	-6,979	-18.40%
2012.9~12	19~30% 인하 (5% → 3.5%, 8% → 6.5%)	423,882	402,464	21,418	5.32%	60,090	36,897	23,193	62.86%
2015.9~12	30% 인하 (5% → 3.5%) (연장)	509,269	431,432	77,837	18.04%	111,741	98,820	12,921	13.08%
2016.1~6 (연장)		680,764	603,158	77,606	12.87%	164,780	153,489	11,291	7.36%
2018.7~12	30% 인하 (5% → 3.5%) (연장)	666,018	651,382	14,636	2.25%	154,145	151,941	2,204	1.45%
2019.1~5 (연장)		522,115	522,346	-231	-0.04%	117,058	132,365	-15,307	-11.56%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각 연도 12월호 및 2019년도 6월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개선방안: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 필요

- (사전 국회보고) 개소세 인하 전에 필요성,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
- (사후 국회보고) 개소세 한시적 인하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



- 동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제기
 -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자동차 구입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
 - 일몰도래 전에 특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
 -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

이슈와 논점 제1614호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발간일 : 2019년 9월 19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장영주 입법조사관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임

*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 밖에 없는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림

-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 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임

-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나 증가
- 발생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

표 |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현황

(단위: 개, ha, 억 원)

연도	발생농가수	발생면적	발생기간	손실보상금	발생지역
2015	43(68)	42.9(59.9)	5~9월	87.06	3개 시군(안성, 천안, 제천)
2016	17(32)	15.1(19.7)	5~7월	29.96	2개 시군(안성, 천안)
2017	33(55)	22.7(31.7)	5~7월	45.26	2개 시군(안성, 천안)
2018	67(135)	48.2(80.2)	5~7월	205.46	6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
2019 (8.26.현재)	179(179)	125.1(125.1)	5~8월	305.09(추정)	10개 시군(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계	339(469)	254(316.6)	5~9월	672.83	11개 시군

주: ()은 발생농가와 주변 100m 이내 농가 방제(매몰) 농가수 및 매몰면적임

자료: 정준용,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대책 및 대응방안」, 『식물병해충포럼 침입병해충 대응방안』, 국회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장 황주홍, 2019.9.3., pp.39~57.을 재정리함

-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함
 - 도리어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해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 *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매몰함
- 개선방안으로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 필요
- 동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함

이슈와 논점 제1621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17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유제범 입법조사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아직 치료법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발병하면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역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방과 차단 방역이 최선임
 -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ea)에만 감염
-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병, 이후 파주,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10월 7일 기준 총 13건(89개 농가) 발병, 총 145,546마리의 돼지 살처분
 - ASF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여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풍토병으로 상재, 2007년 유럽으로 유입,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연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
 - 아시아의 경우 2018년 8월 중국을 시작으로 2019년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북한(5월), 한국(9월)까지 확산
 - 2019년 6월 17일 기준 총 51개국(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5개국에서 발병했고, 동기간에 약 253만 마리의 사육 돼지가 살처분되었는데, 그 중 아시아에서만 약 170만 마리(약 67%)가 살처분됨
 - 특히 동기간에 중국은 총 142건, 베트남은 총 2,806건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만 약 100만 마리가 살처분됨
- ASF에 대한 대응체계, 피해보상 및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임
 - ASF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은 관심, 주의, 심각, 위기경보 하향의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현재는 '심각' 단계이며 정부는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집중방역 실시
 - *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은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에 따라 실시

■ 현재 ASF 방제 대책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 ASF 발병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방역당국은 발병 초기에는 야생멧돼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주로 사육돼지 중심의 방역에 치중해왔음
- 이후 10월 2일 DMZ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발견으로 북한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에 ASF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 있음
- 향후 DMZ와 북한 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ASF가 야생멧돼지에 상재화될 경우 언제든지 양돈 농가로 전파될 수 있어 우려됨
-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은 음식물이 돼지에 급여되는 경로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규모 농가에서 여전히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DMZ를 포함한 전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방역을 강화하고, 포획 등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고려해야 함
- 특히 방목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둘째,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 EU와 그 회원국들은 과거 발생경험을 통해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셋째, 양돈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ASF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살처분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함
- 특히 해외여행 시 축산물 반입 자제, 발생 지역 및 농장 출입 시 소독 조치 적극 협조,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방역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

■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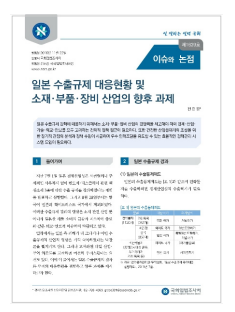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29호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

발간일 : 2019년 11월 22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전은경 입법조사관



-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음. 이에 대하여 이번 수출규제의 산업적 영향은 거의 극복하였다는 낙관론과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공존함
-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국가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인텔 등과 신제품 개발 경쟁 중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기술 및 군사기술에 적용될 첨단 인공지능(AI)에 투입되는 품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장기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단순히 양국간 문제나 주력산업 생산의 불확실성 증가 정도로 보는 것은 과거 자유무역주의 확산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순한 시각임
 - 둘째,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장기적 시각의 정책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적자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발전적 공생관계를 이루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의 분석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셋째, 우수 인력조달을 위해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특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함
 - 산학협력 활성화나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 기술력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력의 필요사항과 이들 목표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경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라는 위기를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는 4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책과제이므로 단기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슈와 논점 제1635호

우리나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와 향후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16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김규호 입법조사관



- 지난 10월 25일 우리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통해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를 공식화함
 - 우리나라는 최초 개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OECD에 가입하면서 개도국 특혜를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만 적용받아옴
 - 그러나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정체 이후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근래 들어 일부 신흥개도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불만이 팽배해짐
 -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 및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그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하여 유지해온 '개도국 특혜'를 '미래 WTO 협상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
- 그러나 ① WTO 회원국들 간 부분 협상이나 새로운 통상조약이 추진될 때 이번 선언이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② 우리가 개도국 특혜 관련 주장을 중단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부터 확보한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점, ③ 거론되는 대책이 새롭지 않고 대부분 원래 추진 중이던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결정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쉽게 찾아들기는 힘들어 보임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함
 - 첫째, 포스트 WTO 시대에 대한 대비
 - 미-중 갈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열풍 등으로 WTO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각국의 회의와 불만이 최근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임
 - 따라서 지금은 WTO 체제의 안팎에서 진행 중인 지역별, 또는 복수국가 간 다수 경제 블록의 확산에 대비할 때임

- WTO 체제 하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국제 통상 협상의 장에서 기본 출발점이 될 것인 바, WTO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통상 조약에 임해본 전례가 없는 농업분야의 대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
 - 이번 결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국회 차원의 보고 및 논의가 없었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 예산안 증가율(4.4%)이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인 9.3%에 크게 못 미침.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이번 결정이 협상대상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농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산업별, 계층별 손익이 다를 수 있는 ‘대외협상’ 추진 시, 정부는 농업계와의 대내협상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농정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셋째, ‘허용보조(Green box)’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활용
 - 정부의 일반서비스나 공공비축, 소득보험 지원, 환경 및 조건불리직불 등의 정책은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어떤 회원국도 감축의무를 지지 않음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라 불리는 감축면제 보조도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 수단임
 - 따라서 농가소득 안전망 마련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향후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9조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농업 등의 보호·육성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된 국내 농업이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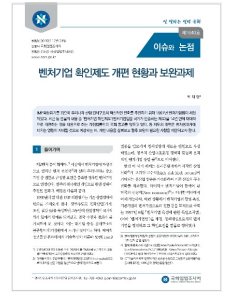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40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현황과 보완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24일

발 간 : 산업자원팀

집 필 : 박재영 입법조사관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

※ **벤처기업 확인제도**: 법률(「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요건 충족여부를 벤처기업 확인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심사를 통해 확인(인증)하는 제도

- 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총 36,804개, 이는 다시 4가지 유형(① 벤처투자, ② 연구개발, ③ 보증·대출, ④ 예비벤처)으로 구분되는데, 보증·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유형③’에 집중(86.9%)
 - * 유형①(2,074개, 5.6%), 유형②(2,657개, 7.2%), 유형③(31,973개, 86.9%), 유형④(100개, 0.3%)
- 개정법률안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받도록 하는 것과 벤처확인 권한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
 -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첫째, 벤처투자자 유형(유형①)과 연구개발조직(유형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보증·대출 유형(유형③)을 폐지하고 셋째,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규정

구 분		인정범위(현행)	개 편(案)
벤처기업 확인기관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등)	→ 민간전문가 중심 (벤처확인위원회)
벤처기업 유형	유형①	벤처투자자 (13개 유형)	→ 벤처투자자 인정 유형 확대
	유형②	연구개발조직 (기업부설연구소 유일)	→ 연구개발조직 인정 유형 확대
	유형③	보증·대출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 폐지

※ 주: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도식화 함

| 그림 |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안

■ 이 보고서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벤처투자자(유형①) 인정 범위 확대를 구체화할 필요
 - 벤처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클라우드 펀드, 기술 지주회사와 같은 신종 투자자도 인정할 필요
- 보증·대출 유형(유형③) 폐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확인할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식, 그리고 이를 확인할 기관(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벤처기업 확인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차이 극복
 - 벤처기업 확인기관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기관(보증, 대출, 융자 지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 혁신성에 대한 평가능력, 재무건전성·신용도에 대한 평가능력, 금융 지원능력 등의 차이 또는 혼선 발생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통일된 심의 기준 마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다수 지정될 경우 기관별 확인위원회의 평가·심의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지표로 보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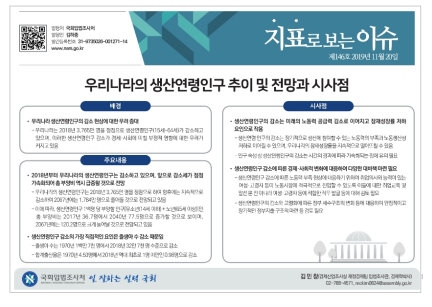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6호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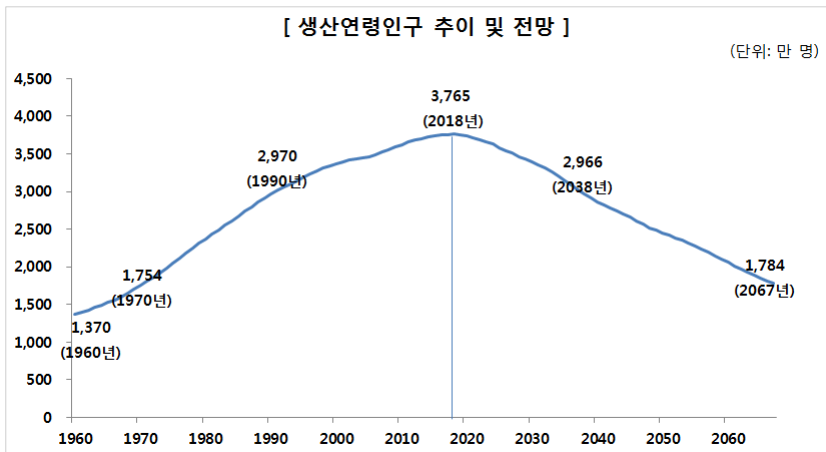
발간일 : 2019년 11월 20일

발간 : 재정경제팀

집필 : 김민창 입법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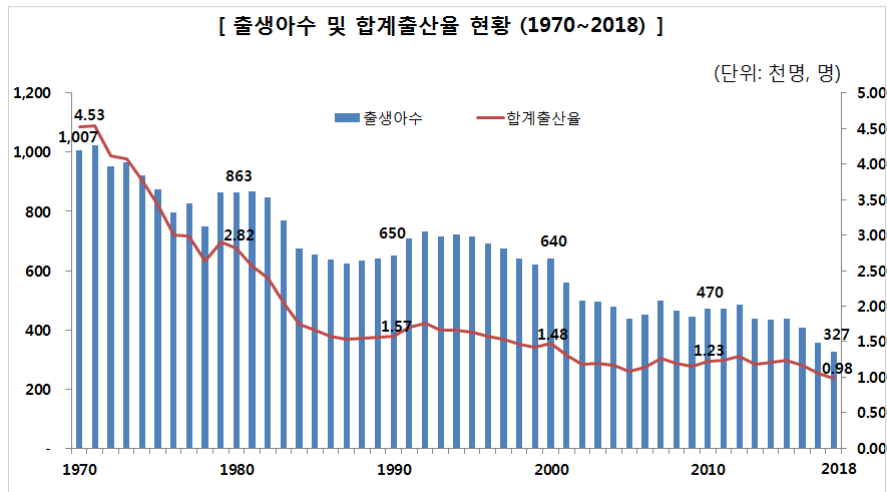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 생산연령 인구, 총인구 전망 등은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2019),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음



주: 2018년 자료는 잠정통계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ecos.bok.or.kr>)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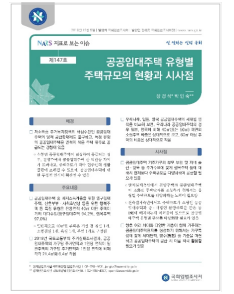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7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5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장경석 입법조사관, 박인숙 입법조사관보



-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음
 -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와 97.0%로 대다수를 차지함
 - 주택수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40㎡ 미만이 42.0%로서 입주가구의 생활불편 및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있음

표 |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별 주택수와 면적분포, 2017년 말 기준

구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
				10년임대	5년임대			
40㎡ 미만	204,366 (94.2%)	90,084 (82.2%)	219,985 (42.0%)	7,003 (4.2%)	7,854 (10.7%)	397 (1.2%)	40,868 (39.6%)	15,387 (97.0%)
40~60㎡ 미만	11,448 (5.3%)	19,381 (17.7%)	304,119 (58.0%)	55,605 (33.1%)	45,322 (61.7%)	20,850 (63.7%)	47,357 (45.9%)	479 (3.0%)
60~85㎡ 미만	1,205 (0.6%)	181 (0.2%)	287 (0.1%)	93,143 (55.4%)	20,188 (27.5%)	8,781 (26.8%)	12,459 (12.1%)	0 (0.0%)
85㎡ 이상	12 (0.0%)	0 (0.0%)	0 (0.0%)	12,227 (7.3%)	108 (0.1%)	2,713 (8.3%)	2,492 (2.4%)	0 (0.0%)
합계	217,031 (100.0%)	109,646 (100.0%)	524,391 (100.0%)	167,978 (100.0%)	73,472 (100.0%)	32,741 (100.0%)	103,176 (100.0%)	15,866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2018.

-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 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임

- 가구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45.9㎡)가 일반주택 거주가구(67.3㎡)에 비해 21.4㎡가 작음
- 1인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25.6㎡)가 일반주택 거주가구(32.0㎡)에 비해 6.4㎡가 작음
- 우리나라, 일본,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당 면적분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국에 비해 40㎡ 미만(또는 5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음
 - 우리나라(46.7%), 일본(23.7%), 영국(26.5%)
 - * 영국의 경우, 50㎡ 미만 주택의 비중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도록,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房數)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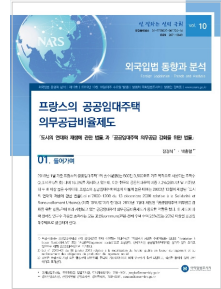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과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발간일 : 2019년 10월 16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산업자원팀

집 필 : 장경석 입법조사관, 박충렬 입법조사관



-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2000년 에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과 2013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기초지자체(코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코뮌이 적용대상임
 - * 코뮌(commune):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공급비율은 20%였으나,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함
 - *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높아(5년간 5%)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장애가 있는 코뮌은 의무공급비율을 20%로 적용함
 -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 PLAI)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함

-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 중임
 -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코뮌은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함
 -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코뮌에 대해 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코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 비율제도를 미시행
 -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함(세종 11.3%, 광주 10.4%, 충남 5.0%, 경북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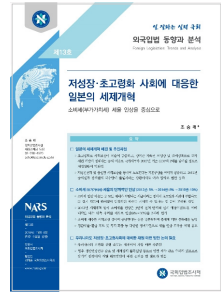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3호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1월 6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조승래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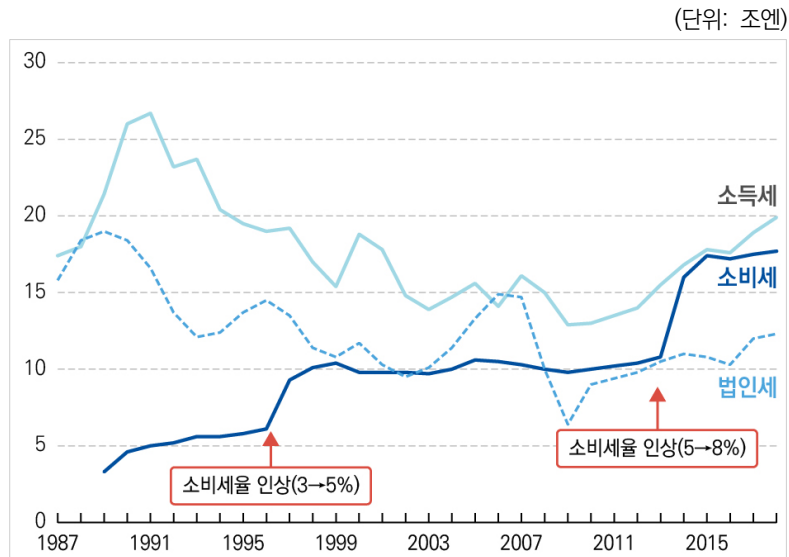


■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

-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됨
-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 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 일본의 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 단계적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

- 인상 이유는 ①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②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



| 그림 | 일본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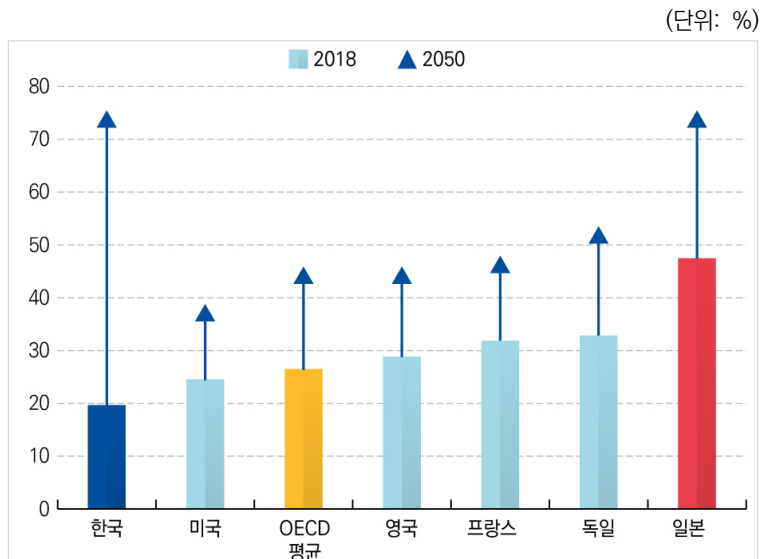
- 2012년 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
-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
-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일본 「소비세법(消費税法)」

제1조제2항 소비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매년 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 우리나라도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임
 -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
 - ※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 수반 예상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림 | 주요국의 노인부양률 전망(2018년→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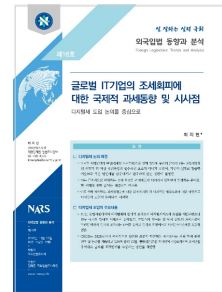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6호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1월 27일

발 간 : 재정경제팀

집 필 : 최지현 입법조사관보



■ 디지털세 도입 논의 배경

- 디지털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됨
- 이로 인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함

■ 국제적 과세동향

-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함
- 한편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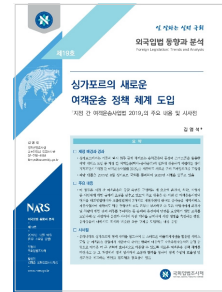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18일

발 간 : 국토해양팀

집 필 : 김영석 입법조사관



- 싱가포르는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지점 간 여객운송 사업법 2019」를 제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
 - 기존의 택시 위주 규제 체계로는 승차공유의 등장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약 서비스 도입 등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를 제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 이 법률은 지점 간 여객운송의 공급 측면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운전자, 차량, 사업자 중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배회영업면허와 호출영업면허 2가지로 개편하면서 대규모 승차공유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영업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함
 - 모든 사업자에게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
 -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승차공유에 대해서도 택시와 비슷한 요금 규제를 도입함
-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객운송 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객운송 산업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기존 정책만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등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마련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 정책 당사자가 참여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정책 수립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III

사회문화조사실

01. 입법·정책보고서
02. 입법영향분석보고서
03. NARS 현안분석
04. 이슈와 논점
05. 지표로 보는 이슈
06.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07.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입법·정책보고서 제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31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박선권 입법조사관



-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음
 -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급증하게 되어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확립된 상태에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보고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질적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음
 - 첫째, 인프라 및 환경의 측면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공간적 비용 애로와 불안정성,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주변 유해환경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수 확대에서 지자체별 정비로의 전환,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희공간 발굴·제공 지원, 주변 인프라 연계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공간모델 마련 등을 제안 하였음
 - 둘째,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인식부족, 선별적 선정기준에 따른 아동의 낙인감과 사회적 오명의 유발,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공식적 홍보와 안내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내실화, 돌봄필요 중심의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통합시설화 등을 제안하였음

- 셋째, 인력, 의사결정, 종사자 처우의 측면에서 상시적 인력기근 상태, 고용시설장·생활복지사의 설치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종사자 배치 기준 보완, 아동자치회의 프로그램화,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종사자 처우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 넷째, 서비스의 측면에서 사업안내 프로그램과 아동과 학부모 욕구간의 괴리, 실무 및 돌봄 지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시도 지원단의 기능 약화, 여타 돌봄체계와의 경쟁으로 인한 아동 모집의 어려움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당사자 수요 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시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강화, 지역아동센터 위상의 재정립 및 여타 돌봄체계와 관계 설정 등을 제안하였음
- 다섯째, 재원의 측면에서 기본운영비 대비 프로그램비 5% 기준의 비현실성, 일부 후원이나 자원봉사의 실효성과 관리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비 산정기준 마련, 자원봉사 및 후원의 시도지원단 관리 배분을 제안하였음
- 끝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에서 지적해 왔던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결과들에 대해 전반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입법·정책보고서 제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1월 15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장은덕 입법조사관



- 2010년대 이후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인한 데이터 이용 급증이라는 통신환경 변화 속에서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2년부터, 지자체는 2011년 서울시부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는데,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3,369개소 (AP 32,068개)에,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이 구축된 상태임
 - 최근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20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합관제센터도 출범할 예정임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예산투자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다양하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무엇보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범정부계획을 마련할 필요
 - 둘째, 표기방식과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검토할 필요
 - 셋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
 - 넷째, 각종 청사·시설, 대중교통과 역·정류장, 전통시장·공원·관광지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시설주체 간 투자를 책임질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중앙 정부는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 관련 규제개선, 특정 테마 중심 집중투자,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투자 유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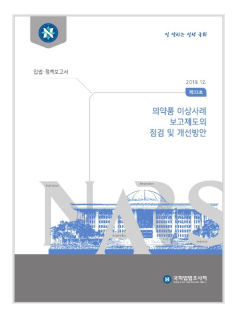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19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김은진 입법조사관



-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현황은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
: 2013년 183,260건 → 2017년 252,611건 → 2018년 257,438건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운영 측면에서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 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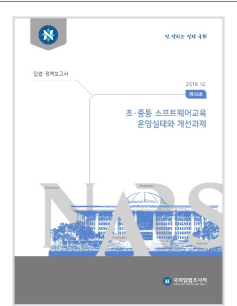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23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교육문화팀

집 필 : 김유향 팀장, 유지연 입법조사관,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를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직업변화에 따른 교육체계의 변화 등에 부응하여, 단순 지식의 습득능력보다 컴퓨터 사고력 기반의 창의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공교육 내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편성·운영하도록 함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행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보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이 2015년 9월에 전부개정되면서 ‘정보’ 교과가 별도로 명시되었으므로,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교과의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학교 관리자,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의 인식 및 지원 편차로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 강화 및 교육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수업 시수 부족 및 학교별 편성의 상이성, 교육과정의 연계 부족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육범위 등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정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넷째, 교원의 양성 및 수급 부족, 교원연수의 내용적·질적 편차 및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연수 이수율 제고방안 및 융합수업·참여중심 수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담당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여 담당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소프트웨어교육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적용, 미래교실·미래학교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디지털 교육환경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보기기 수요 점검 및 지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교육에 적합한 공간 구축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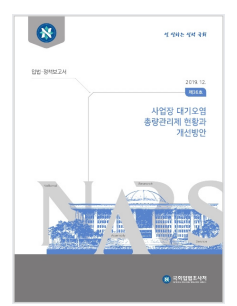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제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26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이해경 입법조사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 이에 국회는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2020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음
 - 첫째,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고, 특히 1단계 (2008년~2012년)의 경우 사업장에 감축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총량이 과다 할당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총량관리제의 배출저감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체계를 마련하여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 법률은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를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총량대비 거래량이 5%미만 수준에 머물 정도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의 배출권거래 실적 저조에 대한 유동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음
 - 특히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 경우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총량 의무를 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총량규제와 농도규제가 동시에 강화되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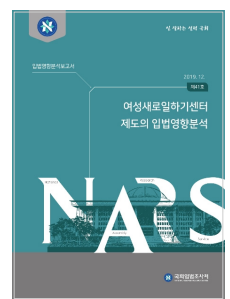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1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20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전윤정 입법조사관



- 2011년 이후, e-새일센터DB를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강화와 고용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
 - 새일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7,133명→2018년 511,953명으로 2.16배, 구직은 2011년 186,940명→2018년 483,802명으로 2.59배, 취업은 117,370명→173,064명으로 1.47배가량 증가함
 - 새일센터 여성취업자의 계층별 특성은 2018년 40대 이상이 전체 76.9%, 고졸 이상이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취업자가 5.2%, 경력단절기간 3년 이내의 취업자 비중이 50.3%를 차지하였음. 경력단절 사유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것보다는 미표시 43.7%, 기타사유 3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미표시와 기타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향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로서의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일자리 개발 즉, 30대~ 40대 초반에 초점을 두는 여성직업훈련개발과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와 제도적 기반마련
 -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 새일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 광역과 지역간 새일센터 업무와 관리의 체계화·효율화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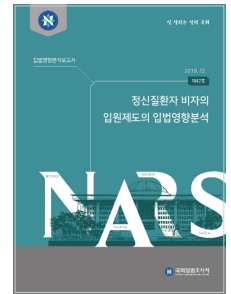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2호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23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이만우 팀장



- 2017년 5월 30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일 직후를 초점으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요건 등의 강화가 ‘탈수용화’를 통한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향상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 법 시행 직후 비자의 입원제도의 ‘탈수용화’ 효과가 관련 지표(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속관리율, 최초입원율, 퇴원율)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드러났으나, 결국 법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입법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법 개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료진, 인권단체, 환자와 그 가족, 정책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돌봄 및 지지의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과 치료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급성기 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함
- 비자의 입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의무자의 범위 확대
 -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해 강제입원 치료 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이 보장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실시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유도하는 ‘중간 집’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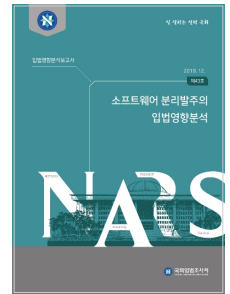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3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24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정준화 입법조사관



- 상용 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성하는 기반기술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일괄발주 및 맞춤형 개발 위주로 SW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용 SW의 경쟁력이 낮은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을 개정하여 5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SW사업에 포함된 5천만원 이상의 상용 SW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기관 등이 상용 SW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분리발주 회피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 비중도 같은 기간 9.0%에서 8.3%로 0.7%p 감소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분리발주 회피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관련 규정상 분리발주 회피 사유가 ‘현저한 비용상승’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추진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
- 상용 SW 분리발주를 정착시키고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분리발주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 상용 SW 기업과 제품이 더욱 활발하게 공공 SW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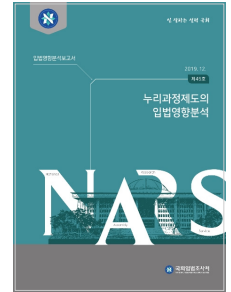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5호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이정미 입법조사관



- 누리과정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하여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어 실시됨
-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이용비용 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다만, 시설유형별(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로 이용비용 부담 격차가 상당한 편이며, 최근(18년)에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부모 이용비용 부담이 증가함
 -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해소 측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의 상당수가 공통 교육·보육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소관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규제 등의 차이로 인해 양 기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기관 선택권 측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대기경험 비율, 대기기간 등의 지표는 악화되어 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측면) 법률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협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재원부담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재원의 불안정성이 초래되었음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하였으나, 재원의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초 3년 한시법('17~'19)으로 제정되어 올해 10월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3년 재연장하기 전까지는 재원부담주체 논란의 재발이 우려되었던 바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누리과정제도의 입법목적 달성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 첫째, 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유형별로 부모의 부담비용의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실질적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 및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시설유형 간 이용비용 격차의 상당부분이 누리과정 지원비용으로 충당되는 기본 유아학비·보육료가 아니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추가 이용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 이용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추가 이용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도 필요함
 - 셋째,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2022년까지로 3년 재연장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다시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보통합 등 보다 근원적인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제도는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므로, 본 보고서를 통해 그 재원부담주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

NARS 현안분석 제76호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18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한인상 입법조사관, 신동윤 입법조사관



■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급속히 증가함

- 플랫폼노동이란 ①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②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보수를 받으며, ③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동, 배달의 민족(이상 배달업), 위시켓, 크몽(이상 크라우드 소싱) 등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우버,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음
-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약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됨(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 「고용동향브리프」 제2호, 2019)
 - ※ 미국의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는 2017년 5월 기준 161만 명(취업자의 1%)으로 추산되며(미국 노동통계국,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5%로 추산됨(JRC COLLEEM)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되어 왔던 노동과는 법률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 등에서 다른 특징이 있음

■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 등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마련하고 있음

- 2016년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19.9.18.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 검증요건을 규정한 AB-5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버 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이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플랫폼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함
- 둘째,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 셋째, 노동관계법 등에 포섭하기 이전에도 업체 간 「공동 행동강령」등 자율적 협약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조성 노력할 필요가 있음



NARS 현안분석 제80호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발간일 : 2019년 11월 18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박선권 입법조사관



- 현행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의 국내 거주 요건, 신고 의무, 환수 규정 등을 정비하고, 글로벌화된 생활양식에 걸맞는 해외체류 기간, 예외사례,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2018년 아동수당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음
-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개정(2015.5.18.)과 「아동수당법」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월평균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가 증가세에 있음
 - 양육수당은 2016년 2,895건,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2019년 6월까지 4,230건 등이었고, 아동수당은 2018년 4개월간 2,261건, 2019년에는 7개월간 3,695건 등이었음
-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첫째,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글로벌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90일 이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정지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보완하여 편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세부 사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양육수당의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1)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여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규정과 2)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규정의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NARS 현안분석 제81호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발간일 : 2019년 11월 21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유의정 팀장



-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이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재판매 될 때에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함
- 미술품의 경우,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저작권료 수입이 가능한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원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원본의 가치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7년 「한-EU자유무역협정」이 계기였으며 당시 협정문에 따르면,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지 2년 내에 추급권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했으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임
- 현재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82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형평성과 국내 미술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급권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추급권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도입 시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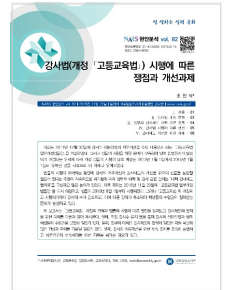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82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1월 22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조인식 입법조사관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이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되기 까지 네 차례 유예됨
-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대학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학생들은 강의가 축소되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부는 2019년 6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강사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1) 강사의 신분안정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강사의 처우개선과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연혁과 법률의 시행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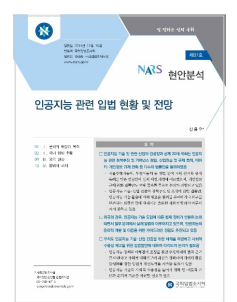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87호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발간일 : 2019년 12월 16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신용우 입법조사관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공지능 관련하여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①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②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인공지능 정책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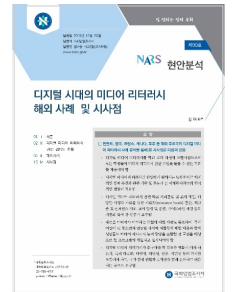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0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20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여라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가 중요함을 인지하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
 - 셋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담은 자료집(resource book) 발간,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교사 양성 및 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지원과 학제 간 연구가 요구됨
 - 새로운 미디어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며, 특히 연령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다문화, 다양성, 다원성, 평등, 시민성 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하고, 국가 간에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공조도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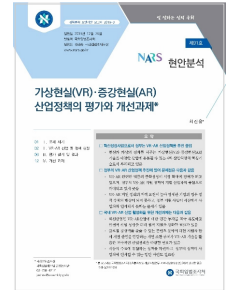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91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26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최진응 입법조사관



- 정부는 13개의 혁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VR·AR을 지정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VR·AR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VR·AR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과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국내 VR·AR 시장 확대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기존 산업에 VR·AR 기술을 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역할이 미흡함
 - 정부의 VR·AR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VR·AR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VR·AR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VR·AR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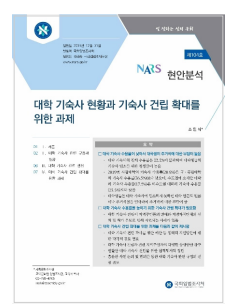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4호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조인식 입법조사관



- 대학 기숙사는 대학 인근의 원룸 임대와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서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수용률이 낮음
 - 2019년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8%)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26.5%)과 비교하여 낮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17.5%)은 비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25.5%)보다 낮음
-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대학 기숙사 건립을 확대를 위한 과제로 1)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2) 대학과 지역주민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관점에서 검토, 3)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4) 대학 기숙사 수용률 관련 규정의 신설 검토 등을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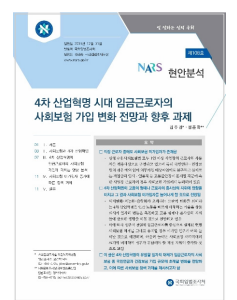
NARS 현안분석 제108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주경 입법조사관, 정준화 입법조사관



-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임시직 임금 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 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04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제1617호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0월 11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박소영 입법조사관



-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구분별하게 출판
 - * 약탈적 또는 허위 학술지·학회·출판사 등으로도 칭해짐
 - 부실학회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권위 있는 편집부·높은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들이 투고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부실학회 문제가 심각
 -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킵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소, 4대 과학원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함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현재 해외의 대응을 살펴보면,
 -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하여 특정 부실학회에 대해 5,010만 달러의 금전적 구제조치와 영업금지 명령을 주문하고*, 연구자에게는 자발적인 자성을 촉구하고 있음
 - * 연방거래위원회가 2016년 8월 제소하였고, 네바다 연방법원이 2019년 5월 이를 인용함
 - 독일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연구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함

- 중국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마련,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의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을 2018년 5월 발표함
- 인도는 논문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차원의 학술지·학회 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8년 8월 최근 5년간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R&D사업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5월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조치 방안 등을 발표
-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측면의 대처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
 -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부실학회 투고 행위를 교정하고 연구 생태계 왜곡을 개선해야 함
 -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징계·제재 시 관련 규정 및 대상 부실학회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슈와 논점 제1619호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발간일 : 2019년 10월 15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유향 팀장



-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딥페이크영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의 선거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책적 입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연예인 및 일반인 여성의 딥페이크 영상이 전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나, 아직 딥페이크 관련 정책 및 입법이 부재함
- 최근에는 단 1장의 얼굴 이미지 사진을 ‘말하는 얼굴 동영상(talking head videos)’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할 정도로 기술발전이 급격하기에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
 - 딥페이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개발, 관련 영상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함
 - 미국은 국방부 등이 관련 식별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딥페이크가 실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세계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군사안보, 외교, 경제, 사회적으로도 광범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의 정부비판 언론인 라나 아ୟ(Rana Ayyub)의 딥페이크 영상이 대표적 사례임
- 딥페이크가 전세계적으로 문제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임
 - 가짜뉴스 대응 입법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은 현재 연방의회에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뉴욕주 등 주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딥페이크는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검토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다방면에서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슈와 논점 제1622호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발간일 : 2019년 10월 21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여라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OTT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였음
- 첫째, OTT서비스를 「방송법」에 포섭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OTT서비스의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음
 -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IPTV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OTT서비스 사업자를 「방송법」의 규제 체계 내에 포함하여,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부터 VOD,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까지 각 사업자 간의,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
 - 참고로 EU는 2018년 11월 6일 채택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개정안에서 동영상공유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s)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한 바 있음
- 둘째,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OTT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최소한의 심의 근거가 필요함
- OTT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더 늦지 않게 「방송법」의 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는 확장되고 있음
- 텔레비전 같으면서도 텔레비전과 다른 미디어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률상 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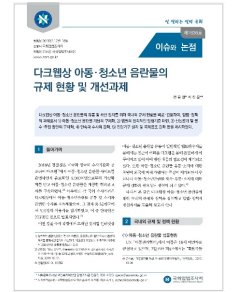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36호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18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전윤정 입법조사관, 최진영 입법조사관



- 2018년 경찰청은 미국, 영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함. 이후 각국의 지속적인 수사로 32개국에서 310명 이용자를 검거하였고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드러남
- 그런데, 해외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법정형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새로운 유통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의 구체화, 합리적인 양형 기준 마련, 다크웹 수사 절차의 개선, 전담기구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을 국제수준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소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 다크웹상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영리적인 수익 확보에 대해 신상공개와 몰수·추징방안의 구체화
 - 다크웹에 대한 함정수사,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수사 등이 가능하도록 형사 절차의 개선
 -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신고 전담기구 설치 및 국제공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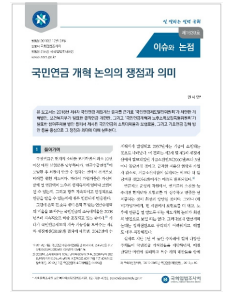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39호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의미

발간일 : 2019년 12월 24일

발 간 : 보건복지여성팀

집 필 : 원시연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살펴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관련, 현행제도의 유지 방안과 인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담률 비교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완화하고 동시에 소득적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단계별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한편,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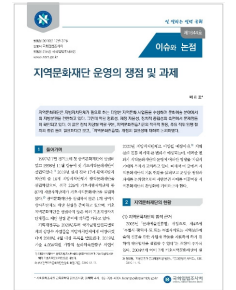
이슈와 논점 제1644호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배관표 입법조사관



- 2019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음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여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이 발생함
 - 광역문화재단은 자체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자율성을 갖기 어려움
 -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의 인사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음
-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광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문화 진흥 계정의 신설,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신설, 포괄적 성과 계약을 기반으로 한 출연금의 편성 등도 검토될 수 있음
 -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을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개선해나가야 함

이슈와 논점 제1645호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 본 보고서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불시장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하여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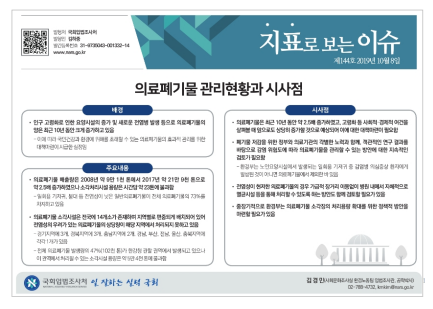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4호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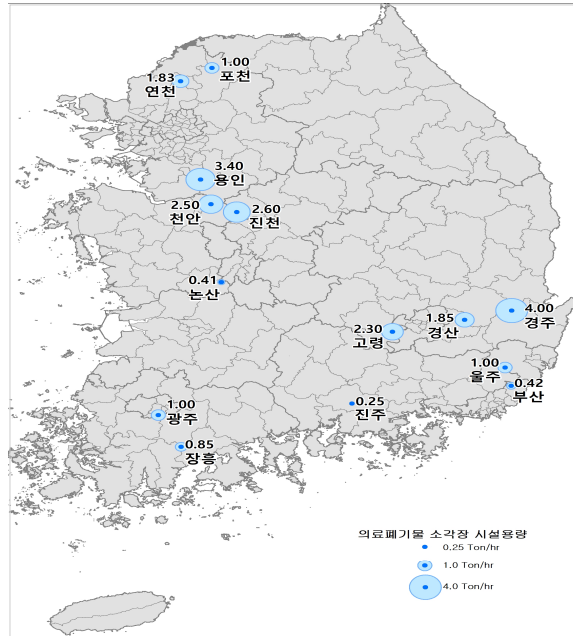
발간일 : 2019년 10월 8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김경민 입법조사관



-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 1천톤 배출되었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하여 약 21만 9천 톤이 배출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음
 - ※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음
 -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함



주: 전국에 분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량은 2,500kg/h 로4시간, 30일, 12개월 시설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21만 6천 톤이 처리됨)

자료: 환경부(2018), 『2017년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구성

그림 |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 위치와 시설용량

-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km 이상 이동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개선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보고서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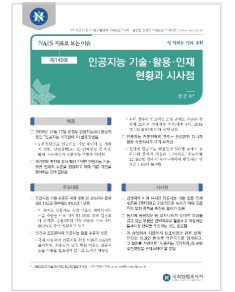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9호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31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정준화 입법조사관



- 2019년 12월 17일 발표된 범정부 인공지능(AI) 종합계획인 「인공지능 국가전략」 본격 추진에 앞서 국가전략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하였음
- 분석 결과,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6%로 중국과 일본보다 낮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3.4%로 중국·일본보다 낮지만, 응용SW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6.6%로 중국·일본보다 높은 상황임
- 활용 측면에서 국내 사업체의 인공지능 활용 비율은 0.6%에 불과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 수준은 전세계 26위로 크게 낮았음
- 인재 측면에서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 중에서 우리나라 출신자 비율은 1.4%이고, 전문 인력 22,400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른 향후 인공지능 정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수준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응용SW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는 틈새시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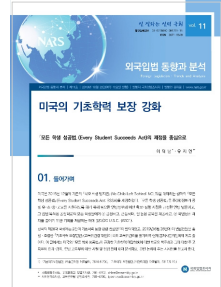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제정을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0월 23일

발 간 : 교육문화팀

집 필 : 이덕남 입법조사관, 유지연 입법조사관



- 미국은 2015년 12월에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고, 이는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대체하는 성격임
 -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州)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예산 확보·집행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임
 -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①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②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함
- 미국 연방 법률인 「모든 학생 성공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학교와 교육구, 주 교육부, 연방 교육부) 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함
 - 연방 교육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 교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학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의회와 교육당사자에게 평가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함
 - 주 교육부는 주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책무성 계획을 목표로 수립하고, 미달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함
 -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기초학력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되 자율성도 보장함
- 한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장,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에 활용되는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과 실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담당교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①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②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③ 미달학교에 대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④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⑤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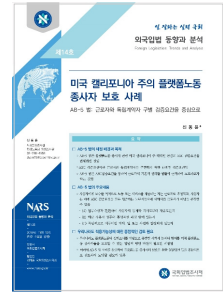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4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AB-5법: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구별 검증요건을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1월 13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신동운 입법조사관



- 미국은 2019.9.18. AB-5 법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9.9.18. 통과된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Dynamex 판결'을 법제화한 것으로 ABC 검증요건 등의 내용을 「노동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ABC 검증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되는 것을 말함
-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의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함
 -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따라서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되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향유하게 됨
-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음
 -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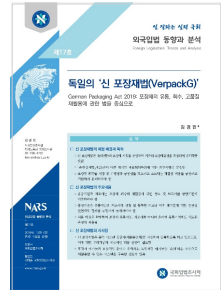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7호

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발간일 : 2019년 12월 4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김경민 입법조사관



- 2017.7.5. 독일의 신 포장재법이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유럽 개별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신 포장재법은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장재 폐기물에 반영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제 대한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 유통기업, 제조사, 중앙정부, 소비자 모두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에 참여
 -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추가기재해야 하고,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용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처리 시스템과는 별도로 민간 회사에 의해 포장재 및 용기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스템
 - 중앙기관은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에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함
- 우리나라도 신 포장재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독일은 EU의 포장재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를,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함

- 유럽으로 수출되는 우리 포장재 관련 기업은 유럽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보다 강화되어 제정된 신 포장재법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함
 - 보다 강화된 신 포장재법에 따라 추후 유럽 포장재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기업은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의 듀얼 시스템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제품 및 상품의 수출이 가능함
 -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는 '순환'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재활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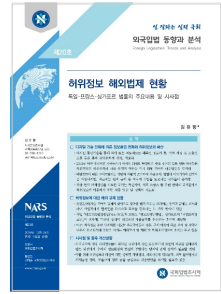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0호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25일

발 간 : 과학방송통신팀

집 필 : 김유향 팀장



- 2016년 미국 대선이후 가짜뉴스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많은 국가들은 허위정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모델에는 행위자 자발적 준수부터 자율규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규제 등 적극적 수단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증가함
- 본 보고서는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독일과 선거기간 해외발 허위조작정보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 아시아 국가 최초 허위정보 대응법률을 발효한 싱가포르의 법제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은 허위정보를 비롯 독일형법상 불법 내용물에 대해 소셜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함
 -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은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삭제와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의 해외 허위정보 유포 방송사 차단 권한 등을 명시함
 - 싱가포르는 국제적 금융허브, 다양한 인종구성, 발전된 인터넷환경 등으로 인해 허위정보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허위조작정보법」을 도입함
- 우리는 정보환경이 해외로부터 허위정보가 유입되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다르고, 싱가포르의 국가적 특성과도 다르기에 우리의 정보환경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우리는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허위정보와 규제 대상에 대한 명백한 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그리고 자율규제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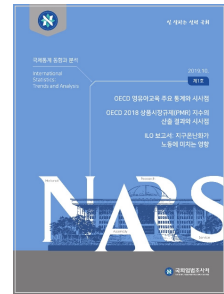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호

1.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와 시사점
2.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
3. ILO 보고서: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발간일 : 2019년 10월 10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이정미 입법조사관, 김민창 입법조사관, 이동영 입법조사관보



1.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와 시사점

- 최근 10여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영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유아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기인함.
- OECD 회원국의 만 3-5세 유아 취원율은 2005년 76%에서 2017년 87%로,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은 2010년 25%에서 2017년 36%로 각각 11%p 상승함
 - 한편, 국가별 통계를 비교해보면, 영아의 취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모성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관성이 발견됨
- 한국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의 시행(2012년)에 따라 만 3-5세 취원율은 2010년 85%에서 2017년 95%로, 만 3세 미만 취원율은 2010년 38%에서 2017년 56%로 상승하였음
 - 한국의 경우 만 3-5세 유아와 만 3세 미만 영아의 취원율이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교사 1명당 아동 수(13.0명)는 OECD 평균(15.7명)에 비해 낮아,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공립기관의 비중(22%)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았으며,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영아 취원율을 보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모성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특징이 나타났음

2.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

- OECD에서 5년마다 OECD 회원국 및 기타 주요국의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산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지수를 정리하였음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1.69로 조사대상 34개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1.4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터키가 2.28(1위)로 가장 높고, 영국이 0.79(34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진입장벽’ 분야의 규제강도가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진입장벽(Barriers to Domestic and Foreign Entry)’ 분야 규제 수준은 1.72(2위)로 OECD 평균(1.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특히,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장벽’(Barriers in Service & Network Sectors)과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항목의 지수가 각각 2.59(2위)와 1.49(2위)로 나타나 다른 나라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ILO 보고서: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으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팬찮은 일자리를 없애며,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2030년에는 전 세계 총 노동시간의 2.2%가 감소하고, 약 8,000만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하며, GDP 손실은 2조 4천억 달러(한화 약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우리나라는 총 노동시간의 0.08%와 약 21,000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 분야, 건설업 분야에 주로 발생하므로 산업별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농업 부문을 서비스 부문 등으로 바꾸는 경제적 구조 변환이 필요함
 - 정부는 폭염을 저감시키고 적응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사업주는

- 근로자 예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건강한 근로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 환경을 따르고 체온 상승을 억제하여 열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으로 불리는 상호 모니터링 체계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바 있고, 더위체감지수 제공,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마련, 폭염 노출 옥외 작업자 휴식 조항 마련 등으로 폭염 대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제적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가능 온도 기준을 정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폭염 대비·적응 정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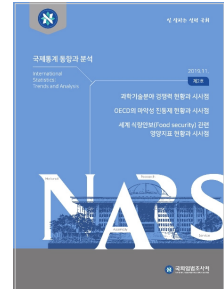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2호

1.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2. OECD의 마약성 진통제 현황과 시사점
3. 세계 식량안보(Food security) 관련 영양지표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1월 14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권성훈 입법조사관, 박소영 입법조사관,
김은진 입법조사관, 장영주 입법조사관



1.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간한 통계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현황을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은 세계 5위임
 - 세계적으로 국제특허(PCT 기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은 세계 5위에 해당함
-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세계 11위, 기술무역 수지비는 하위권임
 -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세계 11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으로 나타내는 기술무역 수지비는 일본이 압도적 우위이고, 우리나라는 0.63으로 하위권에 속함
- 우리나라 기술수출 생산성은 OECD 20개국 중 19위임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입을 통한 국제특허 생산성은 높지만 기술수출 생산성은 OECD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함

2. OECD의 마약성 진통제 현황과 시사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대응 보고서를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OECD 37개국 중 28위임
 - 2011~2013년 대비 2014~2016년에 약 14.7% 증가함
- 우리나라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압수량은 OECD 평균보다 2.7배 많음
 - 우리나라 인구 백만 명당 불법 유통 마약성 진통제 평균 압수량은 OECD 37개국 중 5위로 OECD 평균보다 약 2.7배 많음
- OECD 25개 국가의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 평균은 20% 증가함
-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
 -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통·거래, 오남용 폐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또한,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환자 안전 프로그램 시행 및 불법 유통·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세계 식량안보(Food security) 관련 영양지표 현황과 시사점

- 2017년부터 유엔세계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공동발간하고 있는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현황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의 주요평가 지표인 세계 식량안보 관련 영양지표를 정리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는 기아 관련 지표인 영양부족률(PoU), 아동 성장지연률은 세계 평균이 소폭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5세 미만 아동 과체중률, 성인 비만율과 15~49세 여성 빈혈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가 현대에서는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의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 이므로 각국의 농업·식품·영양·건강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에너지 측면에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식품의 다양성과 미량영양소 함량이 충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가용성, 접근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그동안 기아의 주요 원인은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식품공급 불안정이었으나, 분쟁으로 인한 식품 접근성 감소가 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쌀 국제원조, 국제농업협력 및 국제개발원조(ODA)사업 추진 시 식량안보 국제동향 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은 영양부족률, 5세 미만 성장지연율 등은 고소득국가와 같은 2.5% 미만으로 안정적이나, 북한은 2016~2018년 영양부족인구가 1,200만 명(47.8%)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5세 미만 아동 과체중률, 성인 비만률이 계속 증가 추세이므로, 이들 지표의 증가 추세를 막고 숨은 기아(hidden hunger)*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식품가격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식사 구성과 질을 보장하는 식생활 정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철분, 요오드, 비타민 A, 아연 등 미량영양소의 결핍을 뜻하며, FAO는 약 20억 명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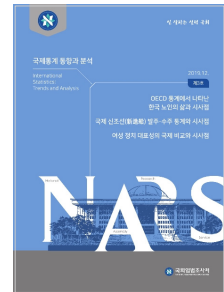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1.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2. 국제 신조선(新造船) 발주·수주 통계와 시사점
3. 여성 정치 대표성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발간일 : 2019년 12월 12일

발 간 : 환경노동팀

집 필 : 원시연 입법조사관, 정재한 입법조사관, 이정진 입법조사관



1.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등과 우리나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정리함
-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82.4세로 OECD 36개국 중 10위이나 은퇴후 기대여명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짧음
 -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인이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한국 노인들이 다른 회원국 노인들에 비해 경제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어 은퇴 후의 기대여명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43.8%가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임
 -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증가하여, 65~69세는 OECD에서 2위, 70~74세는 격차가 매우 큰 1위를 차지함
 - 66~75세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35.5%이고, 76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률은 55.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빈곤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매우 낮음
 - 한국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기준 18.5%에 그쳐,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

-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현저히 높은 1위임
 - 특히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살로 마감하는 초고령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줌
-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령자용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국제 신조선(新造船) 발주·수주 통계와 시사점

- ‘클락슨 리서치’(<https://sin.clarksons.net>)의 데이터베이스자료를 통해 연도별, 국가별, 선종별 신조선 발주 및 수주 통계를 검토하였고, 연도별, 국가별, 선종별 신조선 발주 및 수주 통계를 검토하였음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연간 수주 실적이 중국에 앞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에 주력 선종의 대량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도 신조선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
 - 2019년 세계 선박 시장의 발주 감소(전년 대비 51.3%)로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실적(695만CGT)은 전년 대비 52.8% 수준임
- 우리나라의 신조선 시장 점유율 강화와 안정적인 수주실적 확보를 위해 선종 간 수주 편차를 완화하고, 중형조선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며, 친환경·스미트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와 조선업계,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3. 여성 정치 대표성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 OECD의 「Women in Politics(2019)」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제공하는 각국 의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 및 세계 각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 관련 주요 통계를 정리하였음
- 2017년 기준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7.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8.8%보다 낮음
 -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음
 -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7.0%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0위임
- 전 세계 190개국 가운데 98개국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1개 국가에서 법률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함
 - 한국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실시 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2002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함
 - 프랑스와 멕시코는 지역구 선거에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의원원의 비율을 높이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여성할당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

발간일 | 2020년 1월 15일

발행인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편집인 | 김준 사회문화조사실장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인쇄 | 명문인쇄공사(TEL. 02-2079-9200)

ISBN | 978-89-93502-48-0

발간등록번호 | 31-9735043-001757-01

©국회입법조사처, 2020



2019 주요 보고서 요약집

NARS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3-001757-01
ISBN 978-89-93502-48-0